

##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속

韓國語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이하 「취학 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를 국가가 학생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대여형 장학금과는 달리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입 1 학년생은 2 회(4 월과 7 월)의 신청수속이 필요합니다(7 월 수속은 매년 필요합니다).

### 지급대상의 요건

- 보호자 등의 「과세 표준액(과세 소득액)×6% - 시·정·촌민세의 조정 공제 금액(정령지정 도시에 시민세를 납세하고 있는 경우 조정 공제 금액에 3/4 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는 산정 기준액이 304,200 엔 미만일 것.  
연수입으로는 910 만엔 정도이지만, 부양 등의 조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4 월은 전년도 분의 액수, 7 월은 금년도 분의 액수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 합계액으로 합니다.
- 고등학교 등에 재학한 기간이 통산 36 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을 것.  
정시제·통신제 과정의 경우는 48 개월입니다. 국립·공립·사립 모두 해당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업료는 4 분기로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금액은 한 해 동안 전일제 118,800 엔, 정시제는 32,400 엔, 통신제는 1 단위 당 330 엔입니다. 취학 지원금의 수급에는 심사가 있습니다. 4 월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7 월 상순(예정)에 학교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 신청에 대하여

아래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기한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 ① 온라인으로 신청
- ② 종이 신청서로 신청

어느 방법으로 신청하면 될지 여부는 통학하는 학교 사무실에 상담해 주십시오.

#### <온라인 신청 경우>

학교 사무실이 배포하는 로그인 ID 통지서에 기재된 ID 와 비밀번호로써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청하십시오. 화면의 지시 및 로그인 ID 통지서와 함께 배포되는 조작 매뉴얼에 따라 신청해 주십시오.

#### <종이 신청서로 신청하시는 경우>

학교 사무실이 배포하는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개인번호카드 사본 등」과 함께 학교에 제출하십시오.

「개인번호카드 사본 등」이란 아래 ① 또는 ② 서류를 말합니다.

① 개인번호가 기재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복사한 것.

- 「まいなんばーカード, 개인번호카드」 뒷면
- 개인번호가 기재된 「じゅうみんひょう, 주민표」 등(※1)
- 「まいなんばーつうちカード, 개인번호 통지 카드」(※2)

※1 개인번호가 기재된 주민표 등을 제출하시는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보호자 등의 개인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과 발행한 시·구·정·촌의 공인 및 발행일을 확인 가능한 것이 필요합니다.

※2 「まいなんばーつうちカード, 개인번호 통지 카드」는 2020년 5월 25일에 시행된 디지털 수속법에 의해 폐지되었으나,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경우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재 사항(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개인번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법 시행 전(2020년 5월 25일 이전)에 기재 사항의 변경 수속을 한 경우

◎개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호자 등에 변경이 없는 경우 재학 기간 중의 「まいなんばーカード, 개인번호카드」 또는 기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생활보호 수급 세대인 분은 「せいかつほごじゆきゆうしやうめいしよ, 생활보호 수급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せいかつほごじゆきゆうしやうめいしよ, 생활보호 수급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원본이 필요합니다. 복사된 것은 무효입니다. 제출된 원본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상기 ②의 증명 서류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다음번에 신청할 때에도 「せいかつほごじゆきゆうしやうめいしよ, 생활보호 수급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② 서류 중 어느 것 하나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현재 통학 중인 학교 사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주의해 주십시오!》

취학 지원금 신청 시에는 수입에 따른 세금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금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 개인번호를 제출해 주시더라도 심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결과 통지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을 위한 급부금을 받기 위한 수속

장학을 위한 급부금(이하 「장학급부금」)은 보호자 등 전원(부모양쪽)의 「도·부·현 소득할주민세액」과 「시·정·촌 소득할주민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0 엔인 세대(이하 「비과세 세대」) 또는 생활보호 수급 세대에게, 수업료 이외의 교육에 관한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수속은 보호자가 거주하고 있는 도·도·부·현에서 연 1 회(7 월) 행합니다.

지급액(연액)은 생활보호 수급 세대가 32,300 엔, 비과세 세대가 전일제·정시제 경우 122,100 엔, 통신제는 50,500 엔입니다.

단, 전일제·정시제로, 비과세 세대에서 부양받고 있는 형(오빠), 누나(언니)가 고등학생의 경우 또는 비과세 세대로 고등학생 외에 15 세 이상 23 세 미만의 중학생 이외의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143,700 엔입니다. 이 경우 가족의 부양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취학 지원금과 장학급부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보호자 등 전원이 비과세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학급부금을 이체할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의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영향을 감안하여 2020 년도부터 통상적인 신청에 더하여 아래 2 가지 제도를 새로 수립했습니다.

①신입생에게 앞당겨 급부: 신입생이 있는 세대로 2023 년도 비과세 세대에게, 장학급부금의 일부를 조기 지급합니다. 이 제도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통상적인 신청과는 별개로 신청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가계 급변 세대에 대한 지원: 2024 년도 비과세가 아닌 세대로, 올해 들어 보호자 등 전원의 수입이 비과세 세대 수준으로 줄어든 세대에게, 장학급부금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통상적인 신청의 대상이 아닌 세대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아래 4 개 종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입이 줄어든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수입이 줄어들기 이전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2024 년도 과세증명서(보호자 등 전원의 서류)
3. 수입이 줄어든 이후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자 등 전원의 서류)
4. 세대 전원의 건강보험증 복사본 또는 부양가족 인원수가 기재된 과세증명서

문의처: 학교 또는 오사카부 교육청 시설재무과(06-6944-6913)